

제 호

석유판매업(일반판매소·항공유판매업·특수판매소) 신고확인증

1. 성 명(대표자): (생년월일:)
2. 상 호:
3. 소 재 지:
4. 취 급 유 종: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